



공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검사는 전략적 투자자 甲과 재무적 투자자 乙이 공모하여 실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형 자동차 제조사인 C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 없이 B사의 주가를 부양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위반, 소위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하였음.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 재무적 투자자 乙을 변호하였고, 최근 제1심에서 乙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2고합405, 2022고합495, 2023고합322(병합)}.

2. 본건 사실관계

甲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전기버스 사업을 영위하던 비상장회사 A사를 소유하고 있었음. 이후 甲은, 재무적 투자자인 乙과 함께 전기소형차를 생산하는 상장회사 B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음. 甲과 乙은 당시 B사로 하여금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주주가 되도록 하고 이어서 역합병 방식으로 A사와 B사를 합병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B사로 하여금 타법인 주식취득 목적의 대규모 자금조달 예정공시를 하도록 하였음. 한편 B사는 그 이후에 대형 자동차 제조사인 C사의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사 인수에 관한 공시도 하였음. 한편, 대규모 자금조달은 그 일부만 성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乙은 B사의 CB와 BW를 인수하였으며, B사의 C사 인수는 결국 무산되었음. 그러자 검사는 전략적 투자자 甲과 재무적 투자자 乙이 허위공시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으로 기소하였음.

3.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는 甲과 乙에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 및 C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 법무법인(유) 세종은 甲과 乙에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B사는 조달한 자금으로 A사 주식을 인수한 후 역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위법하지도 않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음을 여러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

적으로 설명하였음. 나아가 공시된 금액의 40% 이상을 실제로 조달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외부적 상황으로 인하여 조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점도 상세하게 밝혔음. 검사는 乙이 B사의 주가가 상승하면 B사의 CB, BW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B사의 CB, BW는 1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乙이 단기간의 주가 부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음.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형 자동차 제조사인 C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당시 유력한 투자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는 점, 투자회사를 통하여 C사의 공장 부지 개발을 이용한 자금조달 추진하는 등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실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투자회사가 송부한 자료, 이메일 및 SNS 대화 내역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또한 乙은 이미 B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C사 인수에 실패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乙에게 사기적 부정거래의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음.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乙에게 공시된 내용대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C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乙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음.

4. 본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 판결은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타회사 인수와 같은 거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성공과 실패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러한 거래가 실패하였다는 결과에만 주목하여 경영자나 투자자를 형사처벌 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하며 자료가 방대한 경우에는 재판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양한 쟁점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종합적인 변호 역량 및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관련구성원

최창영

대표변호사

02-316-1947

cychoi@shinkim.com

김세종

변호사

02-316-4108

sejongkim@shinkim.com

백상현

변호사

02-316-1774

shbaek@shinkim.com

강재민

변호사

02-316-1990

jmkang@shinkim.com

정수영

변호사

02-316-1978

syochung@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